

##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

**관련근거**

- 「주택법」 제57조 제7항

**주택건설사업 개요**

- 사업명 : 양주옥정지구 A17-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
(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)
- 사업지 : 경기도 양주시 양주옥정지구 A17-2블럭
- 사업주체 : 옥정플러스피에프브이(주)
- 시공사 : 한신공영(주)
- 대지면적(m<sup>2</sup>) : 44,850.30m<sup>2</sup>
- 연면적(m<sup>2</sup>) : 134,614.3411m<sup>2</sup>
- 아파트 동수 : 9개동
- 지하층/지상층 : 지상29층 / 지하2층
- 세대수 : 767세대
- 입주자모집승인권자 : 양주시청
- 가산비 공시 주체 : 옥정플러스피에프브이(주)

**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산비 공시**

	항 목	금 액
택지 가산비	<b>합계</b>	<b>10,129백만원</b>
	기간이자	2,085백만원
	제세공과금	3,189백만원
	말뚝박기 공사비	3,362백만원
	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	460백만원
	지역난방부담금	1,033백만원
건축 가산비	<b>합계</b>	<b>24,616백만원</b>
	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	1,220백만원
	인텔리전트설비 가산비	12,884백만원
	공동주택성능등급	2,951백만원
	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공사	3,154백만원
	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	1,024백만원
	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	2,438백만원
	분양보증수수료	945백만원

※ (주의 문구)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